##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66

발의연월일: 2021. 12. 2.

발 의 자:조명희·김석기·김성원

박대수・성일종・조경태

추경호 · 하영제 · 허은아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을 현행 2021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	등에 대한 감면) ①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	
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	
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	
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	
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	
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지방	2025년 12월 31일

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4억원으로 한다)을 소과하는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